

建築法解説

박우하 (건설부건축과장)

第2章 建築物의 垜地, 構造 및 建築設備

法第9條 (垜地의 安全等)

① 垜地는 排水에 支障이 있거나 이와 隣接하는 道路面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垜地內의 排水에 支障이 없거나 建築物의 用途上 防湿의 必要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湿한 土地, 出水의 憂慮가 많은 土地 또는 塵埃 기타 이와 類似한 것으로 埋立된 土地에 建築物를 建築할 때에는 盛土, 地盤의 改良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垜地에는 雨水 및 汚水를 排出하거나 處理하기 위하여 필요한 下水管, 下水溝 또는 溜水탱크 기타 이와 類似한 施設을 하여야 한다.

④ 損潰의 憂慮가 있는 土地에 垜地를 造成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擁壁을 設置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項은 道路, 建築物의 垜地 및 垜地內의 建築物의 地盤面의 높이의 相對의 關係에 對해서 第2項, 第3項은 垜地의 盛土, 排水等의 施設에 對해서 第4項은 擁壁의 設置 기타 安全을 위한 措置에 對해서 原則的인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令第27條 (下水管等의 材料)

法第9條第3項에 規定하는 下水管, 下水溝 기타 이와 類似한 施設은 耐水材料 또는 鑄鐵로 만들어야 된다.

法第10條 (構造耐力)

① 建築物은 自重, 積載荷重, 積雪, 風壓, 土壓, 水壓, 地震 기타 衝擊에 對하여 安全한 構造를 가져야 한다.

② 第5條第2號 및 第3號에 該當하는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는 構造計算에 依하여 構造의 安全性을 確認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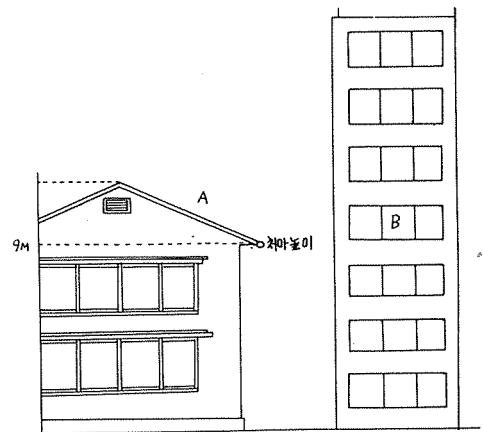
第1項은 建築物의 構造는 予想되는 荷重 및 外力에 對해서 安全하지 않으면 안될 原則을 規定한 것이다. 第2項은 法第5條第2號, 第3號에 該當하는

(a) 延面積이 3百平方미터 以上이거나 3層以上인 木造의 建築物

(b) 延面積이 2百平方미터 以上이거나 2層以上인 木造以外의 建築物에 對하여는 建築할 때에는 반드시 構造計算에 依하여 構造의 安全性을 確認하여야 한다.

法第11條 (大規模 建築物의 主要構造部)

① 높이 13미터以上 또는 처마의 높이가 9미터 以上이거나 延面積이 3千平方미터 以上인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지붕을 除外한다)는 木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높이 13미터以上 또는 처마 높이 9미터 以上의 建築物은 主要構造部(바닥, 지붕 및 階段은 除外한다)를 石造, 煉瓦造, 콘크리트부록造, 無筋콘크리트造 기타 이와 類似한 構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特別한 補強을 함으로서 構造計算에 依하여 그 構造의 安全이 確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項은 平時 또는 非常時에 있어서 建築物이 받은 災害는, 火災, 震災, 기타 많은 種類가 있다. 이들 災害에 依해서 生기는 建築物自體의 被害 및 附近에 미치는 損害의 程度는 建築物의 높이 또는 크기에 따라서 甚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들 各種의 災害에 對한 抵抗性도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의 構造方法의 種類에 따라 많은 差異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主要部分의 構造의 種類와 許容할 수 있는 높이 또는 크기의 關係를 規定한 것이다.

A, 木造 또는 主要構造部(바닥, 지붕 및 階段은 除外한다)가 石造, 煉瓦造, 콘크리트부목造, 無筋콘크리트造 등의 建築物.

B; 鐵筋, 鐵骨콘크리트造 또는 木造 以外의 構造로서 特別한 補強을 하여, 構造計算上 安全한 建築物.

第2項은 特別히 地震, 기타의 震動, 衝擊에 對한 構造耐力上의 必要로부터 第1項의 要求에 附加된 規定으로서 但書의 規定에 依한 補強을 하지 않을 때에는 組積造와 같은 構造 또는 無筋콘크리트造를 禁하고 있다. 이 項에서는 延面積의 限度는 規定하고 있지 않다.

法第12條(防火地區外의 區域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構造制限)

① 市長, 郡守는 防火地區外의 市街地로서 防火上 特別히 必要한 때에는 區域을 指定公告하고 當該地域 안에서 的 建築物 構造를 制限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建築物의 規模, 用途 및 構造制限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項은 市長, 郡守가 防火上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防火地區外에서 區域을 指定公告하며 建築物의 構造를 制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第2項은 建築物의 規模, 用途 및 構造制限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大統領令으로 規定하도록 委任하고 있다.

令第91條(防火地區外의 區域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構造制限等)

① 防火地區外의 市街地로서 市長, 郡守가 防火上 特別히 필요하여 法第12條第1항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한 區域 안에서 建築物을 建築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 다만, 亭子類의 建築物 또는 延面積 10平方미터未滿의 倉庫,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붕은 不燃材料로 하여야 한다.

2. 木造建築物의 外壁中 延燒할 憂慮가 있는 部分의 壁은 延燒를 防止할 수 있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

② 法第1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區域內에 있는 木造의 特殊建築物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은 그 外壁 및 처마의 延燒할 憂慮가 있는 部分을 防火構造로 하여야 한다.

1. 學校, 劇場, 映畫館, 演藝場, 觀覽場, 集會場, 市場, 公衆의 用에 供하는 浴湯 또는 車庫의 用에 供하는 建築物.

2. 百貨店, 共同住宅, 寄宿舍, 病院 또는 倉庫의 用에 供하는 2層以上의 建築物로서 그 用에 供하는 部分의 面積의 合計가 200平方미터 以上인 建築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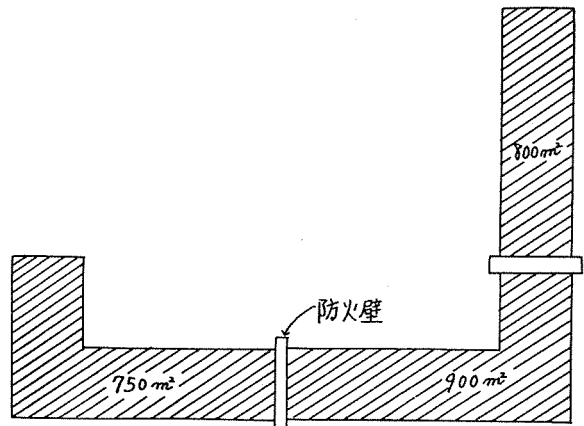
③ 法第1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區域內에 있는 木造의 特殊建築物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은 그 壁 및 天井(天井이 없을 때에는 지붕)의 室內에 面하는 部分은 防火構造로 하거나 不燃材料, 木毛세멘트板 기타 이와 類似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防火塗料로 塗裝하여야 한다.

1. 劇場, 映畫館, 演藝場 또는 集會場의 用에 供하는 것으로서 容席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100平方미터 이상인 建築物.

2. 共同住宅, 寄宿舍 또는 病院의 用에 供하는 部分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100平方미터 以上인 建築物.

3. 車庫의 用에 供하는 建築物.

防火地區外의 區域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構造制限으로서 市長, 郡守는 防火地區外의 市街地로서 防火上 特別히 必要하여 指定한 區域 안에서 建築物의 構造를 制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大規模인 木造建築物의 防火壁

法第15條(大規模의 木造建築物의 外壁 等)

延面積이 千平方미터 以上인 木造의 建築物은 그 外壁 및 처마밑의 延燒의 憂慮가 있는 部分을 防火構造로 하고 그 지붕은 不燃材料로 하여야 한다.

法第16條(防火壁)

延面積이 千平方미터 以上인 建築物은 防火壁으로 서 區劃하되 各區劃의 延面積은 千平方미터 未滿 이어야 한다. 다만, 建築物의 主要構造部가 耐火 構造이거나 不燃材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法第17條(特殊建築物의 耐火構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特殊建築物은 그 主要 構造部를 耐火構造로 하여야 한다. 다만, 延面積 이 50平方미터 未滿인 單層의 附屬建築物로서 外 壁 및 처마밑 面을 防火構造로 한것 또는 舞台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劇場, 映畵館, 演藝場 또는 集會場의 用에 供 하는 것으로서 그 客席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2 百平方미터(屋外觀覽席에 있어서는 千平方미터) 以上인것.
 2. 建築物의 2層을 病院, 共同住宅, 寄宿舍, 旅 館 또는 倉庫의 用에 供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用에 供하는 部分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4百 平方미터 以上인것.
 3. 建築物의 3層以上의 層을 學校, 病院, 劇場, 映畵館, 演藝場, 觀覽場, 集會場, 共同住宅, 寄 宿舍 또는 旅館의 用에 供하는것.
 4. 建築物의 3層以上의 層을 百貨店, 市場, 展 覽會場, 舞蹈場, 遊技場 또는 倉庫의 用에 供하 는 경우에 있어서 그 用에 供하는 部分의 바닥 面積의 合計가 2百平方미터 以上인것.
 5. 車庫의 用에 供하는 것으로서 그 用에 供하는 部分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30平方미터 以上인것.
- 이 條文은 特殊建築物의 用途의 大部分에 對해서 그 用途의 種類, 層數 또는 바닥面積等을 規制하 여 各條件에 對해서 耐火構造로 建築物을 建築할 것을 規定한 것이다.

令第28條(構造計算의 原則)

① 建築物의 構造設計에 있어서는 그 構造의 種別 에 따라 기둥, 보, 바닥, 벽 등을 有效하게 配置 하여 建築物 全体가 이에 作用하는 自重, 積載荷 重, 積雪, 風壓, 土壓, 水壓 및 地震 기타의 震動 또는 衝擊에 對하여 均等하게 構造耐力上 安全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②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인 壁은 建築物의 用途 上 支障이 없는限 建築物에 作用하는 水平力에 抵 抗하도록 均衡있게 配置하여야 한다.

③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에는 使用上 支障이 되는 變形이 생기지 아니할 剛性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④ 建築物의 基礎는 그의 地盤의 不同沈下 또는 凍上에 對하여 構造耐力上 安全하게 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構造計劃上 基本原則을 記述한 것으로 서 第1項은 기둥, 보, 바닥, 壁의 配置에 對해서 構造別(木造, 鉄筋콘크리트造)로 適應한 配置를 하여야 할것이고 따라서 構造에 適合한 構造部材 를 配置하여 構造物 全体가 各部分과 均等하게 하여 安全性을 가질 수 있는 構造로 할 것을 規定 한 것이다.

壁은 그 配置, 構造方法에 따라서 建築物에 커다 란 水平耐力을 附與하는 効力을 갖는 것으로, 第 2項에 있어서는 이러한 効力을 發揮시키기 위하 여는 各部의 水平力에 抵抗하도록 均衡있게 配置 할 것을 規定한 것이다. 第3項은 構造部材는 適 當한 剛性을 가질 것을 規定하고 있다.

第4項은 基礎에 對해서 不同沈下 또는 凍上에 對 하여 注意를 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地中에 包含되어 있는 水分이 0°C以下로 되면 凍結하여 土壤容積을 增大시키므로 建物의 基礎를 破壞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各地方의 凍結深度는 다음 表의 程度 로 보아 基礎를 設計하여야 할것이다.

地 名	凍結深度(m)	地 名	凍結深度(m)
江 陵	0.90	全 州	0.60
서 울	1.00	蔚 山	0.50
仁 川	0.60	光 州	0.50
鬱 陵 島	0.40	釜 山	0.60
秋 風 嶺	0.80	木 浦	0.40
浦 項	0.80	麗 水	0.40
大 邱	0.80	濟 州	0.30

令第29條(構造部材의 耐久)

①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에 使用되는 木材로서 벽돌, 콘크리트, 흙 기타 이와 類似한 抱水性의 物체에 接하는 部分(心壁 또는 흙벽에 接하는 部

分을 除外한다)에는 防腐塗料를 塗布하거나 이와 同等以上の 効果를 가진 防腐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建築物의 壁으로 直接 혹은 接하는 部分은 門, 담, 광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에 있어서의 경우를 除外하고 耐水材料로 만들어야 한다.

③ 建築物의 基礎에 나무말뚝을 使用할 때에는 그 나무말뚝은 單層木造 建築物에 使用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常水面下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木造部分의 防腐에 對한 問題는 耐久上 重要な 要素로서 이 條文에는 防腐措置에 對한 規定이다.

나무말뚝은 常水面以下에 있도록 하면 永久히 腐蝕하지 아니한다.

令第30條(摩損의 防止)

建築物의 構造部分으로 特히 摩損의 憂慮가 많은 것에 對하여는 이를 防止할 수 있는 材料를 使用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構造部分의 摩損에 있어서 斷面의 減少를 가져오면 그만큼 構造耐力는 低下된다. 階段, 驛의 改札口 등과 같이 摩損의 憂慮가 많은 部分은 摩損되지 않은 材料로 만들거나 또는 이를 防止할 수 있는 材料로서 保護를 하여야 한다.

令第31條(帳壁 및 지붕, 개와 등의 緊結)

① 帳壁은 骨構에 緊結하여야 한다.

② 개와는 처마 및 박공에 있어서는 2 열이상을 장마다, 기타부분에 있어서는 지붕面 5 장마다 1 장씩을 銅線, 鐵線 및 못 등으로 蓋板에 緊結하거나 이와 同等의 効力을 가진 方法으로 미끌어져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어야 한다.

③ 建築物에 붙이는 裝飾石, 테레캇다 기타 이와 類似한 것은 볼트, 꺾쇠 기타의 鐵物로 骨構 또는 壁에 緊結하여야 한다.

地震 또는 暴風時에 개와 등이 떨어져 人畜에 危害를 주는 일이 많은 것이다. 이 條文은 이러한 事態를 防止하기 위하여 帳壁의 到壤 또는 개와의 떨어질 憂慮가 있는 것의 緊結措置를 規定한 것이다.

帳壁이란 外部로부터 커다란 “힘”을 받을 수 있게 計劃되어 있지 않다.

即 카텐, 월인 것이다.

令第32條(適用範圍)

이 節의 規定은 木造의 建築物 또는 木造와 組積造 기타 構造와를 併用하는 建築物의 木造의 構造部分에 이를 適用한다. 다만, 亭子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 또는 延面積이 10 平方미터 이내의 광

倉庫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에 對하여는 예외로 한다.

構造部分이란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을 말하는 것이며 構造體를 形成하는데 있어서 欠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석가래, 蓋板(지붕널), 天井과 같은 部分은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은 아니다.

이 條文은 그 適用範圍를 亭子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 또는 延面積이 10 平方미터 以內의 광, 倉庫 등의 小規模인 建築物은 除外하는 規定이다.

令第33條(木材)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에 使用하는 木材의 品質은 마디, 썩정, 纖維의 傾斜, 죽 등에 依한 耐力上의 缺點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木材는 耐力에 커다란 影響을 미칠 欠점이 없는 것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解体한 建築物의 古材를 使用할 때에는 構造耐力上 欠점이 없는 가를 充分히 確認한 後에 使用하여야 한다.

令第34條(土台)

① 構造耐力上 主要한 기둥으로서 最下層에 使用하는 것의 下部에는 土台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기둥을 基礎에 緊結하였을 때 또는 單層의 建築物로서 밀둥잡이를 使用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 土台는 基礎에 緊結하여야 한다. 다만, 單層의 建築物로서 延面積이 50 平方미터 以內의 것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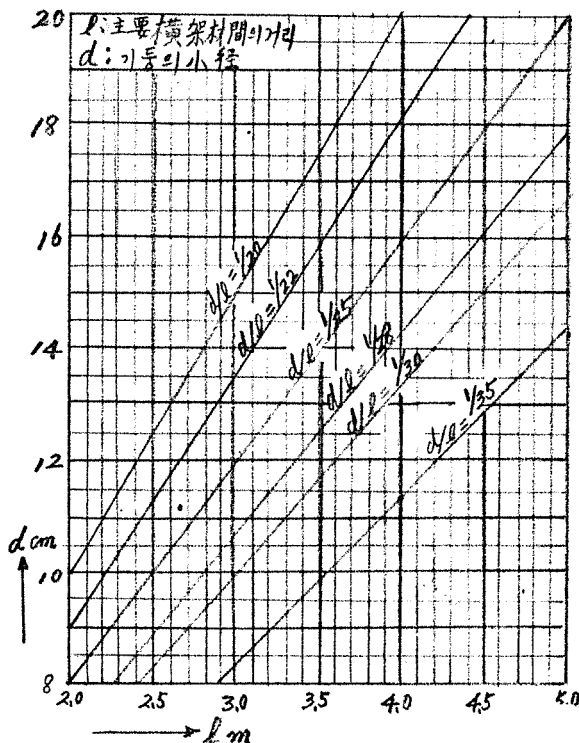
不同沈下 및 地震力, 風壓力에 對하여 기둥의 相對水平變位의 防止上 土台를 設置하는 것을 原則으로 規定하고 있다. 또는 복도의 기둥과 같이 下部에 鐵物로 密둥잡이로 基礎에 緊結하였을 때와 單層建築物로서 密둥잡이를 하였을 때에는 同等程度의 效果가 있다고 認定한다.

第2 項은 單層建築物로서 延面積이 50 平方미터 以內의 것에 對하여는 반드시 緊結을 要하지 않은 規定이다. 이 緩和規定은 地震, 暴風時를 考慮하면 建築場所 및 建物의 輕重에 따라 土台는 基礎에 緊結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令第35條(기둥의 小徑)

① 構造耐力上 主要한 기둥의 小徑은 이에 接하는 土台, 密둥잡이, 층도리, 보, 도리 기타의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인 橫架材의 相互間의 垂直距離에 對하여는 다음의 表의 比率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건 기 축 동 물	스팬相互間隔이 10미터 以上の 기둥 또는 學校,病院,劇場,映 画館,演藝館,觀覽場,公會堂,集 會場,百貨店,公衆浴湯이나 寄 宿舍의 用途에 쓰이는 建築物 의 기둥	左欄以外の 기둥					
	最上層 또는 最下層의 建築物 기둥	最上層의 直下層의 기둥	기타의 層의 기둥	最上層 또는 最下層의 層數가 1인 建築物 기둥	最上層 또는 最下層의 層의 기둥	기타 層의 기둥	
(1)	第76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多雪區域에 있어서 建築物 또는 木骨벽돌造, 木骨石造, 흙벽造 기타 이와類似的한 壁의 重量이 特別히 큰 建築物의 경우	22분의 1	20분의 1	18분의 1	25분의 1	22분의 1	20분의 1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붕을 金屬板, 石板, 石綿板, 木板 기타 이와類似的한 輕量 材料로 덮은 建築物의 경우	30분의 1	25분의 1	22분의 1	35분의 1	30분의 1	25분의 1
(3)	(1) 및 (2)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경우	25분의 1	2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25분의 1	22분의 1



● 主要橫架材間의 距離와 기둥의 小徑

② 層數가 2 以上の 建築物에 있어서 모서리 기둥 또는 이에 準하는 기둥은 通채 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接合部를 通채 기둥과 同等 以上の 耐力를 가지도록 補強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建築物의 剛性, 防腐等에 對해서는 計算을 하여 기둥材의 크기를 定하는 일은 通常하고 있지 않다. 기둥의 徑이 적은 것은 이러한 問題에 對해서는 좋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條文에는 使用할 기둥材의 最小徑을 스패의 크기 또는 多數人을 收容하는 建築物과 그렇지 않은 建築物과 用途上 大別하여 規定하고 있다.

令第36條(보 등의 橫架材)

보, 도리 기타의 橫架材에 그 中央部附近의 下側을 파내거나 缺損을 만들어 耐力上 支障을 주어서 는 아니된다.

보, 도리 等 橫架材의 中央部附近의 下側은 通常 引張側으로서 파내거나, 缺損이 있으면 耐力의 低下를 갖어오는 것이다. 故로 耐力上 支障을 갖어오지 않도록 하는 規定이다.

令第37條(가새 및 그의 맞춤)

① 引張力을 負擔하는 가새에는 이에 接하는 기둥

의 5분의 1 이상의 斷面積을 가지는 木材 또는 지름 9 밀리미터 이상의 鐵筋이나 이와 同等以上の 強度를 가진 기타의 鐵材를 使用하여야 한다.

② 壓縮力을 負擔하는 加새에는 이에 接하는 기둥의 3분의 1 이상의 斷面積을 가진 木材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耐力를 가진 材料를 使用하여야 한다.

③ 加새는 그 端部를 기둥과 보 기타의 橫架材와의 맞춤에 接近하여 볼트, 鉗쇠, 못 기타의 鐵物로 緊結하여야 한다.

④ 加새는 파내거나 缺損을 만들어 耐力上 支障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加새는 木造建築物에 耐震力, 耐風力을 附與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役割을 하는 部材이다. 이러한 加새가 보, 기둥 등의 各部의 接合이 重要한 것이다. 第1項 第2項에는 引張力 또는 壓縮力을 負擔하는 加새材의 斷面의 크기를 規定하고 第3項에 있어서는 加새端部와 기둥과 橫架材와의 맞춤에 接近하여 引張力 또는 壓縮力에 依하여 分離되지 않도록 볼트, 鉗쇠, 못 등 適當한 鐵物로서 緊結할 것을 規定한 것이다.

令第38條(構造耐力上 必要한 骨構 等)

① 構造耐力上 重要한 壁, 기둥 및 橫架材를 木造로 하는 建築物에 있어서는 모든 方向의 水平力에 對하여 安全하도록 各層의 스펀 方向 및 どり 方向에 各各 壁 또는 加새를 넣은 骨構를 均衡있게 配置하여야 한다. 다만, 버팀대, 버팀기둥 또는 버팀벽이 있어서 構造耐力上 支障이 없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 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使用하고 지붕틀에는 空間 加새를 設置하여야 한다.

前條에 있어서는 加새材의 치수, 맞춤에 對하여 規定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加새를 어느程度 넣으면 좋은가를 規定하고 있다. 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使用하여 建築物이 一體的으로 되도록 하는 것을 第1項 第2項에 規定하고 있다.

令第39條(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의 이음 또는 맞춤)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의 이음 또는 맞춤은 볼트, 鉗쇠, 비너장 기타 이와 類似한 것에 依한 構造方法으로서 그 部分의 局部應力을 傳達하도록 緊結하여야 한다.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의 이음, 맞춤에 欠陷이

있을 때는 所定の 耐力를 確保할 수 없다. 따라서 볼트조임, 鉗쇠를 박거나 기타 비너장等 特殊鐵物로 補強하여 같은 効力을 갖일 수 있는 構法으로서 그 部分에 일어나는 應力을 完全히 傳達할 수 있도록 緊結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令第40條(外壁内部의 防腐措置)

木造의 外壁의 全部 또는 一部가 鐵網물탈칠, 불임돌造 기타 骨造가 腐蝕하기 쉬운 構造인 때에는 그 部分의 下地에 防水紙를 使用하고 그 위에 地面으로부터 1 미터 以內에 있는 部分의 기둥, 加새 및 土台에는 克雷오스트 기타의 防腐濟를 塗布하여야 한다. 다만, 그 部分의 壁의 内部에 通氣되는 構造로 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防火構造로서 外壁을 鐵網물탈칠等으로 한 部分의 軸部의 木材는 腐蝕하기 쉬우므로 그 바탕에 防水紙를 使用할 것은 勿論이고 가장 穢기 쉬운 部分인 地面부터 높이 1 미터 以下에 있는 部分의 主要構造部材에는 防腐濟를 塗布할 것을 原則적으로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令第41條(불임돌 等)

① 불임돌(불임기와 類似한 것을 包含한다) 로서 木造의 骨構를 싸우는 構造의 建築物에 있어서는 불임돌의 두께는 地面으로부터 1 미터 以內의 部分을 除外하고 5 센티미터 以下로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建築物의 불임돌의 두께가 1.5 센티미터를 넘은 것은 鉗쇠, 銅線 기타 이와 類似한 腐蝕하기 힘든 鐵物로 떨어져지 아니하도록 骨構에 緊結하여야 한다.

木造의 骨構를 싸우는 石構造(불임돌) 등은 構造上 荷重을 負擔하는 것은 木造의 骨構로서 불임돌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무겁게 되어 耐震上 不利한 構造가 된다. 또는 돌불임은 地震에 依하여 떠러져 危險이 큰것으로서 그 불임돌의 두께가 1.5 센티미터를 넘은 것은 鉗쇠, 銅線, 못等으로서 骨構에 充分히 緊結하여야 하고 돌불임의 두께는 5 센티미터 以下로 할 것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令第42條(適用範圍)

① 이 節의 規定은 벽돌造, 石造, 콩크리트부록造 기타의 組積造의 建築物 또는 組積造와 木造 기타의 構造와를 併用하는 建築物의 組積造의 構造部分에 適用한다. 다만, 鐵筋 또는 鐵骨로 補強된 部分으로서 構造計算 또는 實驗에 依하여 이 節의 規定에 適合한 것과 同等 以上の 耐力를 가진다고 確認된 것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